

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(이하에서는 '대학원'이라 한다) 입학전형절차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(이하에서는 '위원회'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학전형절차의 공정성의 유지·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소속) 위원회는 대학원장 소속 하에 둔다.

제3조 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하고,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입학전형 관련 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
2. 서류심사 및 논술시험, 구술면접시험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입학전형의 공정성의 유지·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4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1.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
2. 대학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직원
3. 법관·검사·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비롯한 공익적 인사
- ④ 지원자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5조 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- ②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 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학원장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장은 대학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 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 (운영세칙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8. 9. 1. 제정)

제1조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규정) 대학원이 설립될 때까지 이 내규 상의 대학원장의 업무는 법과대학장이 대행한다.

부 칙(2015. 12. 30. 개정)

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